

의안번호	2217818
의 퇴 인	이주희의원
회 답 일	2026. 6. 18.
추계번호	26B1813

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연구개발의 추진)	정부는 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(제7항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8조(민간 기술개발의 지원)	정부는 민간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·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,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(제4항 신설)	의무규정
		정부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, 실증·상용화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,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(제5항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(연구개발의 추진)	•미대상 -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과학기술기초법」 등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하여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음 - 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1)에서는 나노기술분야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재원 우선 확보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- 「과학기술기초법」 2)에서는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재원 우선 확보,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
2	안 제8조(민간 기술개발의 지원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정부가 민간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·학계·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, 인력교류·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·실증·상용화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·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산·학·연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등 활성화 시책의 내용 및 추진 방식,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민간·공공기관 공동출자회사의 설립 규모 및 정부의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

-
- 1) 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(국가전략기술의 선정·관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.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1.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
 2. 외교·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
 3.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
 4.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·기술 동향
 5.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제11조(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(이하 “전략연구사업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
 2.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(국가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무를 정하고 그 임무를 명확한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) 구축 여부
 3.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쟁하는 방식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.
 - 2)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5조의2(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)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·지원하여야 하고, 필요한 재원(財源)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표 1] 나노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원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2026년)
나노·소재기술개발	미래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나노 및 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, 관련 연구기반(데이터, Fab 등) 구축 - (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)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'100대 첨단소재' 기술개발 지원 - (국가전략기술미래소재기술개발) 12대 전략기술 분야별로 우선 확보해야 하는 미래소재를 발굴하고, 10년 뒤 초격차 목표달성과 기술난제 극복을 위한 R&D지원 - (소재글로벌영커넥트) 신진연구자*의 국가전략기술분야 미래소재 연구를 지원하여, 기술난제를 해결하고 리더십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- (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) 미래 나노소재 트렌드에 부합하는 창의·도전적 연구로, 기술과 산업 준비도를 고려하여 3가지 유형(선도형, 경쟁형, 도전형)으로 지원 - (기반구축)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소재 연구기반 조성, 반도체등 관련 대학·공공 랩 인프라 시설·장비 및 랩 서비스 고도화 등	330,746
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(소자)	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, 초저전력의 반도체핵심기술개발을 통해반도체 생태계의 균형 발전및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- (신소자원천기술개발) 저전압, 정보밀도 개선, 미세 전류 제어, 3차원 집적, 두뇌모사 등 초저전력에서 고성능으로 작동하는 반도체 소자 기술 개발 - (신소자집적기술개발) 신소자의 조기 상용화 및 원천 설계 IP 확보가 가능하도록 웨이퍼레벨에서 신소자 성능을 검증하는 집적소자·검증 기술 개발 - (신개념소자기초기술개발) 미래 반도체 패러다임 선도를 위해 새로운 원리, 신소재, 신공정 등 창의적·도전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 소자 기초기술 개발 등	23,624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II-1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